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RNET) 창립 초기  
활동 내용: 1994



1.

모든 단체들에게 가칭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건설을 위한 제안 최근 사회운동이 거한 조건의 양적, 질적 변화는 우리의 조직적 연대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취지

한국의 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해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권대회 공대위의 활동은, 여러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음 2가지 의의를 지녔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첫째, 공대위는 우리 인권단체들이 결성한 거의 최초의 본격적 연대기구였으며 과거 한국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술하게 많이 만들었던 "공대위"들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더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였습니다.

둘째, 공대위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간인권운동은 거의 최초로 국제적 지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무대, 특히 아시아 권에서 우리의 실제 역량에 비해 분에 넘치는 신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행사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에 대항하는 전 세계 민간단체의 연대활동을 선도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공대위는 아-태지역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활약하였고 잠정적으로 촉진팀의 일원이 되었으며 전 세계 민간단체 계속위원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앞으로 아-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 민간단체의 연대 활동에 조직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대위의 성과를 계승하고 특히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국제 인권활동의 책무를 수행할 조직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인권단체들이 서로의 활동에 관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목표와 사업을 향해 가능한 한 조정과 협력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모든 단체들에게 유익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운동이 처한 조건의 양적, 질적 변화는 우리의 조직적 연대의 필요성을 긴절하게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종래 "공대위"들이 그 결성에만 힘을 기울였을 뿐 내세웠던 목표나 사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오히려 조직의 유지 자체가 각 구성단체의 부담으로만 작용했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내부에 연대기구에 대한 회의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성단체들의 취약한 사업방식과 상호간의 이질적 성격 및 역량의 차이 등도 현실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장애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협의체 또는 공동실천체에 대한 현실의 요구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또한 인권대회 공대위의 활동이 현실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칭 "한국인권단체협의회"라는 상설 협의체의 첫발을 내디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장애는 협의체의 출발 당시 그 조직을 최대한 느슨한 것으로 만들었다가 앞으로 그 활동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그 사업을 강화시켜 가고 처음부터 조직의 규칙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집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 협의체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협의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
- 2. 활동이 이 회의는 인권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결정은 협의체 이사 결정과 일치한다. 협의체 인체의 실무관으로 공대위에 참가한 각 단체의 실무진들의 토론 과정에서 대체로 동의한 바와 같이 상설 협의체는 다음 4가지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 가. 상설 협의체는 다음 4가지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 나.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교환
- 다. 인권운동 활동가의 육성



2. 국제인권활동

3. 회원단체

상설 협의체는 인권대회 공대위에 가담한 단체와 협의체의 취지에 찬동하고 그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해야 합니다.

4. 운영원칙

가. 상설 협의체는 위 2. 항의 나. 내지 라. 활동을 현실조건에 맞추어 수행하는 것(현재 거의 모든 단체들의 역량이 취약하므로 그 활동 역시 미약할 수 밖에 없으나 협의체의 활동을 무리하게 확대하려고 해서는 안됨) 이외에는 그야말로 협의체의 수준, 즉 각 회원단체가 협의체의 결정을 참고할 뿐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 구조를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나. 협의체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는 대표자회의를 두되 이 회의는 1년에 한두번 열어 극히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치고, 일상적 의사 결정과 집행은 1달에 1번 정도 각 단체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에 맡깁니다.

다. 대표자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소집, 기타 협의체의 살림은 회원단체 가운데에서 선임된 간사단체가 맡도록 합니다. 간사단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단체가 돌아가면서 단기간(6개월 내지 1년)씩 맡습니다.

라. 재정은 각 단체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분담금, 예컨대 월 5 내



지 10만원 정도로 충당합니다.

마. 유엔인권대회처럼 공동으로 대처할 중요현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집행체계를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바. 회원단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의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3개월 분의 분담금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그밖에 회원단체가 의무의 이행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하는 징계를 가해야 합니다.

### 5. 조직경로

인권대회 공대위의 집행위원회가 상설 협의체에 관한 제안을 확정해 공대위 가입단체 및 참관단체들에게 배포한 뒤 대표자회의에 상신합니다. 대표자회의가 협의체 결성을 결의하는 경우 별도의 준비팀을 만들어 협의체 결성을 추진합니다. 공대위 가입단체라고 해서 반드시 상설 협의체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며 협의체에는 공대위에 가입하지 않았던 단체들도 널리 가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해야 합니다.



< 가칭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건설 제안과 관련된 보충 제안 > 이대훈

1. 명칭안

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① Korea Human Rights Network, 약칭 KOHRNET (코-넷, 코르넷)
- ② Korea NGO Council for Human Rights, 약칭 KNCHR  
(약칭 KONUCH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③ Korea NGOs' United Coordination for Human Rights
- ④ ②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약칭은 그냥 KONUCH를 사용하는 방안.

2. 활동 내용 : 제안문과 같음

3. 보충제안 :

- 정책연구/두뇌집단 : 최소한의 공동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연구/기획담당자들의 역할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두뇌집단 (think-tank)를 구성하기 힘들더라도 정례화된 정책/이론협의모임 정도는 필요할 듯.
- 언론 : 언론담당자를 특별히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
- 자료실 : 이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규모가 있고 서비스가 용이한 공동 「국제인권자료정보실」이 필요한데, 이는 '간사단체'와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인권정보자료실은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단체의 취약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 이 정보자료실의 위치는 상근자들이 근무할 수 있고 정책연구자들이 드나들기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최소한 10명정도의 공간이 2-4년간 적합한 크기일 듯.
- \* 자료실과 연락사무는 한 단체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단, 그 경비에 대한 공동책임이 무망할 경우는 비현실적.
- 개방성 : 회원단체들은 일정한 책임을 다하게끔 운영이 엄격해야 하나, 다양한 수준의 협의모임은 기층단체(소위 민중단체)와 타주제별 단체(평화, 환경, 여성, 아동, 경제민주화 등)과 함께 하는 개방성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
- 협의회 결성 이전에 타 부문운동과 연합체와의 연대활동방향에 대한 일차적 합의가 있어야 할 듯.

때 : 1994년 6월 20일(월) 오후 6시

곳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S 3.

is with  
s that  
mental  
pecting  
World  
ivities  
aluable  
ced the  
agenda  
nd with  
rmation  
stablish  
ulfill the  
liminate  
s of the

2.

⊗ 노리현경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창립대회 자료집

- 책 262페이지  
7/5, 12시  
연락.

때 : 1994년 6월 20일(월) 오후 6시  
곳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대 회 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인권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인권이란 우리에게 사전이나 책자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설은 단어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만큼 인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억압된 사회에서 살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줄기 속에 다른 사회운동들과 함께 전진,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난 시절 여기 모인 인권운동단체들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헌은 참으로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군사독재의 탄압과 이에 맞서는 싸움의 현장에는 이 자리에 모인 인권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성명은 독재권력의 심장에 꽃히는 날카로운 비수였고,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어머니,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은 사회의 한줄기 빛이었으며, 극심한 탄압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은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결국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라는 큰 흐름의 원천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들과 회원들의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인권탄압에 맞서 싸우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힘을 모아 공통의 과제를 풀어나갈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연대활동의 필요성과 그 놀라운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 3. is with is that mental pecting World ctivities aluable ced the agenda nd with rmation tablish the lfill the iminate s of the

이러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발전을 위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은 인권운동역사에 일대 획을 긋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도 그 영역을 보다 넓고 깊이하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권운동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만 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자임하고 그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진정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확보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토록 할 것이며 특히 수십년간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과거청산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인권교육과 국제연대활동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의 힘찬 기쁨이 높이 올려졌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활동가들과 참여단체들이 있는 한 우리 협의회의 앞날은 매우 밝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을 위하여 애써온 참여단체 대표와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6. 20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 고 영 구



## 격/려/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외세의 지배와 분단체제, 군사독재정권의 지배하에서 초보적 인권조차 무참히 유린되어 왔습니다. 소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지금도 보건, 환경, 노동, 교육, 여성 등 제반 영역에서 국민의 참다운 권리가 실현되지 못함은 물론, 정치적·시민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나라 인권운동은 지난한 노력을 통하여 인권상황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작년 유엔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여 큰 역할을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칫 정부의 일방적인 보고로 잘못 알려질 뻔한 우리의 인권현실을 전세계에 바로 알려냈으며 많은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국제적 연대를 실현한 것입니다. 또, 공동으로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계승하여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공동평가와 사업을 벌여내고 마침내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켜 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그동안 국내외의 인권신장을 위해 함께해 온 인권단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후 우리 인권단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인권문제에 적극 연대하기를 바랍니다. 외세와 분단에 가위눌리고 오랜 독재에 시달려 온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힘차게 출범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과거청산 - 특히 군부독재 잔재청산과 책임자 처벌, 인권에 기반하기보다는 힘의 논리로 회귀하면서 인권탄압을 재개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권운동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우리 운동의 모범이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운동이 자주화와 통일 등 제반 영역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풍부화시켜 인권운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향후 전국연합도 더욱 더 인권운동에 대한 이해와 연대를 높이고 참인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44년째 감옥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세계 최장기수의 존재는 우리 인권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조건에서 누구보다 힘찬 운동을 해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축하에 대신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발전에 기원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S 3.

ts with  
es that  
imental  
pecting  
r World  
ctivities  
valuable  
ced the  
agenda  
and with  
ormation  
stablish  
ulfill the  
eliminate  
s of the

## 격/려/사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민간인권단체들이 모여 인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한 것으로서 크게 환영한다. 오래전부터 소망하던 일이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앞으로 활력있는 인권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과거 군사문화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억눌리고 침해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도 국가안보를 앞세워 함부로 가볍게 다루는 공권력의 횡포도 겪어 보았다. 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어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상도 목격하였다. 이와같은 인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한때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을 찍히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인류가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는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국제적 관심사로 다루고 있던 시대에도 어리석은 우리의 위정자들은 인권을 한낱 국내문제로 잘못 알고 함부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은 급기야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이런 연유로 70년대 중반이후부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이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국가에 대하여서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그 해결방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운동은 정부쪽보다도 비정부조직인 민간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유엔인권회의에서 정부대표보다는 비정부조직(NGO) 대표들이 보다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점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인권단체들도 조직과 활동면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몇차례 국제인권회의에 참가하여 외국의 인권단체와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므로써 나름대로 내실을 다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국내 인권단체들이 상호 연대하여 지혜와 힘을 결집하면 조직과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인권운동의 큰 진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차원높은 인권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세중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 경과보고

-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활동을 계승하는 단체로 그 창립준비과정은 공대위의 집행위와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1993년 3월에 창립한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4월 유엔세계인권대회 아태지역준비회의와 6월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조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펴(참여 활동에 대하여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공대위 자료집) 참조)
- 1993년 8월, 9월에 걸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했던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후속사업을 포함하여 상설적인 사업을 담당할 인권운동조직으로 “인권운동의 조직적 전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논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인식을 확인함
  - 1) 인권운동을 위해 전문적 활동가 양성이 중요함
  - 2) 국제연대에 있어 한국이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야 함
  - 3) 계획적인 인권운동을 위해 인권관련 정보의 집중과 체계화가 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함
  - 4) 인권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또는 사업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 공대위의 후속작업으로
  - 국내사업; 공대위가 수집한 자료정리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자료집 발간 추진
  - 국제연대활동; 동북아시아의 민간인권단체의 연락을 맡아 활동진행
 이 과정에서 계속하여 열린 집행위에서 새로운 상설적인 인권단체연대조직에 대한 위상과 역할, 그리고 현실적 문제(재정 및 역량등)를 토론함
- 1993년 12월 14일 집행위원회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건설을 위한 제안문’을 소위에서 작성하여 제출

- 1994년 3월 21일 집행위원장이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건설을 위한 제안문”을 제출, 제안문은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의의로서 국내인권단체들이 결성한 본격적 연대기구였으며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여주었고, 공대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민간인권운동은 최초로 국제적 지평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국제연대활동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로 국가보안법 행사에 대한 선도의 책무, 아태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활약, 촉진팀의 일원으로 전 세계 민간단체 연대활동을 짚었음
- 공대위의 성과를 계승하고 특히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국제 인권활동의 책무를 수행할 조직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주요사업과 회원단체의 자격, 운영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논의 조직 경로로 공대위의 집행위원회가 상설협의체에 관한 제안을 확정, 공대위 가입단체 및 참관 단체들에게 배포한 후 대표자회의에 상신하기로, 협의체에는 공대위에 가입하지 않았던 단체들도 널리 가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기로 함
- 1994 4월 15일 공대위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상설체에 대한 안건이 논의됨 회칙 가안이 검토됨. 회칙중 양해사항으로 상설 연락처를 우선 민변으로 하고 협의회의 자료는 우선 인권운동 사랑방이 가입을 전제로 관리하기로 결정. 회의에 참석한 민변,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교협 인권위원회, 유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참가할 의사를 밝힘
- 1994년 5월 16일 제21차 공대위 집행위, 6월 1일 22차 집행위에서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준비 및 공대위 해산을 위한 회의 진행
- 1994년 6월 1일 현재 민변, 민가협, 유가협, 불교 인권위, 천주교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법연, 전국연합 인권위 가입 확정
- 1994년 6월 2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 대표자회의 개최. 회칙과 사업안, 임원선출이 이루어짐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름) 본회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약칭 “인권협”, 영문 이름 “Korea Human Rights Network”, 영문 약칭 “KOHNET”)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하여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외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2. 인권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배포
3. 인권교육
4. 국제인권활동

## 제 2 장 회 원

제4조 (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본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고 발언하며 의결에 참가할 권리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의를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조 (탈퇴) 회원단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 또는 집행

위원회에 연속 2회 출석하지 않거나 3개월 분의 회비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징계) 회원단체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제명, 6개월 이하의 정권 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 제 3 장 기 관

제8조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연 2회 이상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재적 회원단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상임대표) ①상임대표는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대표는 대표자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②집행위원회는 각 회원단체가 지명하는 실무대표로 구성하며 월 1회 이상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단체의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단체) ①간사단체는 집행위원회를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간사단체는 대표자회의가 지명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특별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①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연 1회 대표자회의에 보고 한다.  
②감사는 대표자회의가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본회의 모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 (의결) 대표자회의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단체 과반수 찬성으로, 각 의결한다.

#### 제 4 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5 장 회칙의 개정과 보충

제18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은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일반 관례를 따른다.

#### 제 6 장 부 칙

제20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양 해 사 항

회칙에 규정하지 않지만 회원단체들 서로 간에 다음 사항을 양행한다.

1. 상임대표는 각 회원단체가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간사단체는 상임대표를 내지 않는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맡는다.
2. 국외에 알릴 상설 연락처를 두며 우선 민변 사무실로 한다.
3. 협의회의 자료는 한 회원단체가 상시 관리하도록 하며 우선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한다.
4. 가입회비를 30만원으로, 월 회비를 5만원으로 한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 1. 인권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월 1회 이상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협의 및 조정한다.
- 94년도 중심사업
  - ; 과거에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 : 법적 구제활동등
  - ; 인권침해 법률제도, 관행 시정에 관한 협의
  - ;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협의

### 2. 인권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

- 국내자료
  - 1차단계로 각 가입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색인화
  - 목적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각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인권관련자료를 파악하는 것, 각 단체의 재량에 맞게 작성하여 집중시킴
- 해외정보
  - 각 사업별로 준비과정에서 수집(예; 세계여성대회, 개발정상회의)
  - 사업 주제별로 국내정보도 함께 수집

### 3. 인권교육

-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R, ISHR)의 교육 프로그램
  - 일정 장소 : 1994년 10월 6/7부터 3일간, 서울
  - 성격, 주제 :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기구 및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하의 실천적 전략적 접근을 위한 워크숍
  - 진행 : ISHR과 인권협
  - 주최 : 인권협



- 인권운동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권포럼

일정 : 인권주간 기간동안 3- 5일

주제 : 인권의 각 영역에 대하여 소규모 토론형태로 세미나를 진행

#### 4. 국제 인권 연대 활동

##### 1) 아태지역 인권촉진단 활동 및

새로운 임시연락기구(NILC ; New Interim Liaison Committee) 관련 활동

-제네바에서 열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 후속회의때 결정된 수입사항으로 동북아시아의 인권단체에게 정보를 나누는 연락업무

-제네바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 후속회의 결과내용

①비엔나 회의에서 구성된 민간단체 연락기구(NGO Liaison Committee)를 새로운 임시연락기구(NILC)로 전환하며 정보교류의 역할을 계속/시작한다. NILC는 자동해체하고 NILC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지역 부문별 협의과정과 체계화를 지속하며 중요한 진척상황을 NILC에 보고함으로써 공유한다.

③1995년 2월 NILC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여부와 활동수준의 발전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④사무국은 캐나다의 INTERNET이 계속 말되 역할은 정보유통 및 수집, 자료배포이다.

⑤NILC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3인소위(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서 책임지며(재정신청) 지출은 사무활동및 1995년 NILC회의에 한한다.

##### 2) 정기적인 유엔인권기구를 상대로 활동

-종합적인 활동계획의 수립, 대 유엔 활동 점검분석

-실무 및 해외 협력단위 구성

-인권소위, 특별보고자, 실무위 등과의 정보 교환, 초청 (상황에 따라)

-51차 인권위원회 참여준비

-언론작업 담당자 및 계획

-그외 한국 인권관련 외교 모니터 활동

##### 3) 국제회의의 참석과 준비

## 장 립 선 언 문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과거 우리의 오랜 역사는 이러한 가치와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일제의 식민지, 분단과 전쟁, 냉전과 군사독재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는 민중의 고통과 고난, 기아와 질병, 파괴와 가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의 억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로 얼룩져 왔다. 또한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근대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노동·환경·주택·보건문제 등으로 민중의 생존권은 물론 인간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권단체들의 치열한 뜻을 모아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결성을 엄숙히 선언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탄압에 대하여도 단호히 반대한다. 사상·양심·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체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학살, 고문, 폭력 등을 철저히 배격하며 이를 자행하는 어떤 집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건강·교육·환경권 등을 차등없이 향유하여야 한다. 여성, 아동, 노인들도 차별과 학대, 소외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합리화될 수 없는 생존권에 대한 탄압과 위협에 반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할 사회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며 민족적 억압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투쟁을 지지하고 외세의 지배나 간섭, 경제적 예속과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인권침해를 단호히 배격한다. 또한 이념·지역·인종·성별·종교·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대우와 탄압에 대하여 반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이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국민들의 인권의식 성장에 주목하면서 여전히 우리 현실을 움  
아매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일본제국주  
의와 전후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정권안보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  
압하는 악법으로 인권신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둘째, 그동안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권리도 빼앗긴 채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기본법은 국제노동기구의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민과 도시빈민에게도 의료,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자행된 반인륜적 인권침해 범죄와 야만적 범죄자들을  
잇거나 용서하지는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법의 이름을 빌거나 이에 실정법조차 무시한채 권  
력을 남용하여 자행된 범죄행위의 진상은 날날이 밝혀져야 하고 범죄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진상규명과 정당한 처벌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길이며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소중한 활  
동과 경험의 산물이다. 인권운동단체들간의 상설협의조직으로 출범하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오  
늘 창립을 계기로 인권운동의 현안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국내에 기반한 국제  
인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외 인권정보의 수집과 활용, 각종 인권교육활  
동 등을 펼쳐나가려 한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어떠  
한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이땅의 민중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다.

1994년 6월 2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s 3. s with s that mental ecting World ivities luable ed the genda id with mation ablish ifill the minate of the

인권단체협의회(Korea Human Rights Network : KOHRNET) 연락처

상설 연락처 : 민변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참가단체 주소 및 연락처 (6월 20일 현재, 가나다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5-2 선유리빌딩 704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전화 : 747-4364/5 팩스 : 747-8366

136-03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가 44 삼우빌딩 301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화 : 796-8364/5 팩스 : 796-8366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화 : 763-2606, 765-5282 팩스 : 745-5606

110-5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502-7

○ 불교 인권위원회

전화 : 745-1853 팩스 : 745-1854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층 16호

✓인권운동 사랑방

전화 : 796-8364/5 팩스 : 796-8366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전화 : 763-4700 팩스 : 743-2835

110-5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천주교 인권위원회

T. 444-0603. F. 444-626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전화 : 764-0203 팩스 : 744-6189

110-7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706호





**KOHNET**

The Member Organizations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704 Century II Bldg. 1595-2 Seocho-dong Seocho-Ku, Seoul 137-070  
T 82-2-522-7284 F 82-2-522-7285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of Korea**

301 Samwoo Bldg. 44 Dongsomunro 1 Ka Seongbuk-ku, Seoul 136-032  
T 82-2-747-4364/5 F 82-2-747-8363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ELSA)**

501 Kiwon Bldg. Hangangro 2 ka Yongsan-ku, Seoul 140-012  
T 82-2-796-8364 F 82-2-796-8366

**Family Association for Democracy**

592-7 Changsin 2 dong Chongro-ku, Seoul 110-542  
T 82-2-763-2606, 765-5282 F 82-2-745-5604

**Buddhists' Committee for Human Rights**

16/10F Chongro Officetel 58-1 Nakwon-dong Chonro-ku, Seoul 110-320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301 Choyang Bldg. 71-12 Galwol-Dong Yongsan-Ku, Seoul 140-150  
T 82-2-715-9185 F 82-2-715-9186

**National Council of Bereaved Families for Democracy**

651-30 Changsin 2 dong Chongro-ku, Seoul 110-542  
T 82-2-763-4700 F 82-2-743-2835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3F Catholic Bldg. Myongdong 2 ka 1, Chung-ku, seoul 110-022  
T 82-2-777-0643 F 82-2-775-6267

**National Churches' Council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706 Christian Bldg. Yeongi-dong Chongro-ku, Seoul 110-701  
T 82-2-743-0203 F 82-2-744-6189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NET)**



All people, as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their fundamental rights with respect to their human dignity and worth.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NET) believes that humankind has prospered as a result of the struggle to secur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dignity.

Korean organizations struggling to realize a just society and respecting human rights, formed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KONUUCH). Through the activities of KONUCH, the organization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an invaluable experience of solidarity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The successor of KONUCH, KOHNET has firmly denounced the various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KOHNET's own agenda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s active efforts to correspond with organizations to reform the legal system, compile and distribut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educate the people on human right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solidarity. Through such efforts, KOHNET hopes to fulfill the important task which has been entrusted to it, which is to help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marginalized.



4. == 가칭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칙(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름) 본회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약칭 “인권협”, 영문 “Korea Human Rights Network”, 영문 약칭 “KOHARNET”)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하여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외의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인권 현안에 대한 협의
2. 인권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배포
3. 인권교육
4. 국제인권활동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가입)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재적 회원단체 전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회원단체는 본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고 발언하며 의결에 참가할 권리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의를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6 조 (탈퇴) 회원단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 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자회의 또는 집행위원회에 연속 2회 출석하지 않거나 2개월 분의 회비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징계) 회원단체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제명(6개월 이하의 정권, 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8 조 (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

KOHARNET

KOHARNET

**I**n order to do so, KOHARNET has undertaken or has plans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I.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f human rights efforts**

- A. Continuous efforts to publicize and provide legal aid fo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 B. Efforts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which violate human rights
- C. Organization of a task force to respond collectively to grave, newly arising human rights violations

**II.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KOHARNET plans to establish computer and distribution networks on behalf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ts activities, however, will not stop here. After analyzing and organizing the information, KOHARNET will serve as an accessible information bank providing information appropriate to current human rights problems.

**III.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Human rights are an issue of interest and importance not only to experts in that field, but an issue that should also be known by all. For the sake of thorough education and study of these issues, KOHARNET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ntinuous and various methods of education.

- A.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 B.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ights activists
- C. Training about UN human rights bodies

**IV.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y**

Human rights are not just a concern for the Korean people, but they are of universal importance and must be pursued by all of humankind. To promote values respecting universal human rights, KOHARNET has planned positive action as a step towards international solidarity.

- A. Coordinative role as a representative of the New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NILC), an organization created after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held in Vienna (June '93)
- B. Member of Facilitating Team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regular activity with UN Human Rights bodies
- C. Participation in various human rights-related conferences,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정기관으로서 연 2회 이상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재적 회원단체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임대표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9 조 (상임대표) (1) 상임대표는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2) 상임대표는 대표자회의에서 호선한다.

- 제 10 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단체가 지명하는 실무대표로 구성하며 월 1회 이상 ~~간사단체의~~ 집행위원이 소집한다. 재적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간사단체의~~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집행위원장은 간사단체의 대표가 된다.~~  
제 11 조 (간사단체) (1) 간사단체는 집행위원회를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2) 간사단체는 대표자회의가 지명한다.

제 12 조 (특별위원회) 특별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13 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연 1회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2) 감사는 대표자회의가 선출한다.

제 14 조 (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간사단체의 임기는 6월로 한다.

- 제 15 조 (의결) (1) 본회의 모든 회의는 협의할 뿐 의결하지 않으며 회원단체는 협의된 사항에 기속되지 않는다. 다만, 본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3조 제2 내지 4호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이 회칙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회의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는 재적 회원단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단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1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월 /일부터(월/ 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칙의 개정과 보충

제 18 조 (회칙의 개정) 이 회칙은 재적 회원단체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보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 20 조 (시행일) 이 회칙은 199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양해사항

회칙에 규정하지 않지만 회원단체들 서로 간에 다음 사항을 양해한다.

1. 상임대표는 각 회원단체가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간사단체는 상임대표를 내지 않은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맡는다.
2. 국외에 알릴 상설 연락처를 두며 우선 민변 사무실로 한다.
3. 협의회의 자료는 한 회원단체가 상시 관리하도록 하며 우선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한다. (단, 사랑방의 가입을 전제로 함)
4. 가입회비를 30만원으로, 월 회비를 5만원으로 한다.

조직경로

인권대회 공대위의 참가 또는 참관단체 중 희망하는 단체로 우선 협의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단체들에게 적극 가입을 권유하여 회원단체의 수를 늘려간다. (인권대회 공대위의 참가 또는 참관단체 중 희망하는 단체가 협의회에 관한 제안을 확정해 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다른 단체들에게 제시하여 공대위 가입단체 및 참관단체들은 물론 다른 단체들도 창립회원이 되도록 한다.) 창립의 실무작업은 별도의 준비팀을 만들어 수행한다.

5/23-24, 25, 26, 27, 28, 29, 30, 31

Handwritten notes in a cloud shape, containing text that is mostly illegible but appears to be a list or schedule of events.



5.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 \* 수 신 : 민변(이덕우/김은영), 전국연합인권위(고상만), 민주법연(김한균), 민가협(남규선), 불교인권위(서래), 유가협(박찬영), 천주교인권위(오창래), 기독교인권위(신승민) //
- \* 발 신 : 간사단체 (인권운동 사랑방 : 박래군)
- \* 발신일 : 1996년 5월 22일
- \* 제 목 : **인권협 제4차 대표자회의 결과 정리 등**
- \* 쪽 수 : 쪽

☞ 전송중 장애가 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간사단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 2-9차 집행위원회와 제5차 대표자회의를 언제 소집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간사단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단체의 의견으로는 2-9차 집행위원회는 22일(수) 오후 4시경이, 5차 대표자회의는 29일(수) 낮 12시가 좋을 듯합니다. 장소는 의논해서 정합시다.

\* 광주시민연대모임에서 온 제안입니다. 국제청년캠프의 공식 일정이 오는 19일 모두 마무리되는데, 이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 활동가 중 필리핀, 태국 등 몇 나라의 활동가들이 20일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서울서 초청해 모임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간사단체의 생각으로는 이 제안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의 활동가들을 인권협 이름으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 듣고 이후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청년캠프에 참가하는 각 단체에 알려드립니다. 14일부터 참가하는 사람들은 14일(화) 오후4시 전남대 대강당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18일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도 오후4시 전남대 대강당 앞으로 가면 차편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날짜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확실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광주로 떠나기 전에 간사단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72-15 동서빌딩 4층 402호 전화 822-7594 팩스 822-7592

(위원장) 박찬영(유가협), (부위원장) 이덕우(민변), (사무총장) 김승민(기독교인권위), (사무차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총무) 김승민(기독교인권위), (회계)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홍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법률)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연구)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협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기타)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사무총장 김승민(기독교인권위) 사무차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총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회계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홍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법률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연구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협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기타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사무총장 김승민(기독교인권위) 사무차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총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회계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홍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법률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연구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협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기타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사무총장 김승민(기독교인권위) 사무차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총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회계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홍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법률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연구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협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기타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사무총장 김승민(기독교인권위) 사무차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총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회계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홍보 김동환(기독교인권위) 법률 김동환(기독교인권위) 연구 김동환(기독교인권위) 협력 김동환(기독교인권위) 기타 김동환(기독교인권위)

## 제4차 대표자회의 결과 정리

- \* 일시: 96년 5월 7일(화) 낮 12시
- \* 장소: 세실레스토랑
- \* 참석: 김상근(기독교인권위), 진관(불교인권위), 장호순(인권운동사랑방), 권오현(민가협), 고영남(민주법연), 이덕우(민변), 이기욱(전국연합인권위), 오창래(천주교인권위), 박찬영(유가협)
- \* 배석: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김은영(민변), 서래(불교인권위), 남규선(민가협), 고상만(전국연합인권위), 김한균(민주법연), 신승민(기독교인권위)

1. 제2차 년도 사업보고 중 95년 12월-96년 1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평가 워크숍 2회 진행 삽입키로 함. 제2차 년도 사업평가안을 통과하고 단, '4번 항목 인권협의 조직강화를 위해'를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제2차 년도 재정보고 통과. 회비가 많이 밀린 단체인 불교인권위, 민주법연, 유가협 등이 95년까지의 회비를 당감해 줄 것을 요청. 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 세 단체와 전국연합 인권위 95년 말까지의 회비를 당감, 결손처리하기로 함. 단, 이들 단체의 가입비와 96년 이후의 회비는 5월말까지 완납키로 함. 이후 회비 미납 단체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3. 제3차 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 결과,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후속 사업계획'과 '정보의 공유와 집중을 위한 통신사업계획'은 통과하기로 함. '5,6공 인권피해자 관련 사업계획'은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집행위에서 다시 논의하여 안을 정리할 것을 요구함. 이를 빠른 시일 안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검토하기로 함. 단, 사업계획안을 단일한 계획안으로 묶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함.

4. 제3차 년도 대표단체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맡기로 하고, 상임대표로는 김승훈 신부님을 내정함. 간사단체는 민변이 맡기로 함. 단, 김승훈신부님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인 5월20일까지는 민변의 고영구회장님이 상임대표를 임시로 맡는 것으로 결정.

5. 한교협 정의와 인권위원회 참관 결정. 회비는 5월까지 납부하기로 함.

6. 신규단체 가입과 관련, 고난모임과 기독교교회연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두 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7. 경원대 총학생회측의 요청을 수용, 인권협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부장관 등을 접촉하기로 함. 이를 위해 이덕우변호사는 변호사를, 고영남씨는 교수들을, 진관스님은 장영달 의원과 이미경씨등을 맡고, 기독교인권위의 신승민 목사가 김동환 목사 등과 교섭을 하기로 함. 면담 일정은 5월13일에서 15일 사이로 함.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 \* 수 신 : 주한일본대사
- \* 참 조 : 정치과 담당자
- \* 발 신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단체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균(전화:715-9185)
- \* 일 자 : 1996년 7월 25일
- \* 제 목 : 우토로 재일동포의 주거권 인정 촉구 서한 전달의 건
- \* 쪽 수 : 1쪽

1. 우리는 국내외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등 9개 인권단체가 모인 연합조직입니다.
2. 우리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적 차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귀국 교토부 우치시 우토로 마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으며, 지난 5월25일과 7월 중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3. 우리는 오늘 낮 12시 대표단이 귀 대사관을 방문하여 우토로 마을 문제에 대한 한국내 인권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토로 마을 문제에 대한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우토로 마을에 대한 귀국의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4. 이에 귀측은 우리의 서한을 정중히 접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996년 7월 25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훈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사무총장: 김수  
사무총장: 조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사무총장: 김철

우토 마을의 주민들은 1945년 해방 후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재일동포들이 종전 50년이 넘도록 온갖 민족적 차별과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눈물겨운 노력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제 징용되어 마을을 이루고 40년이 넘도록 생활해온 삶의 터전에 쫓겨날 신세에 처한 우토로 재일동포들의 주거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오늘 7월 25일 낮 12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토로 마을의 재판경과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단한 집회와 항의 피켓팅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이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본 교토부 우치시의 우토로 마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토로 마을 문제는 재일 동포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지난 5월 26일 열리는 집회에 대표를 파견, 인권협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7월 중에 인권협 소속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 대표들이 우토로 마을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귀사와 귀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7.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국제부
- \* 발신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단체 인권운동 사랑방 박래군(전화:715-9185)
- \* 일자 : 1996년 7월 25일
- \* 제목 : 일본 우토로 재일동포의 주거권 인정 촉구 일본대사관 항의방문의 건
- \* 쪽수 : 3쪽(성명서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와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金承勳, 이하 인권협)는 9개의 인권단체가 모여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연합 조직입니다.
3. 우리는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간 재일동포들이 종전 50년이 넘도록 온갖 민족적 차별과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눈물겨운 노력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제 징용되어 마을을 이루고 40년이 넘도록 생활해온 삶의 터전에 쫓겨날 신세에 처한 우토로 재일동포들의 주거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오늘 7월 25일 낮 12시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토로 마을의 재판경과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단한 집회와 항의 피켓팅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이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 우리는 일본 교토부 우치시의 우토로 마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토로 마을 문제는 재일 동포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지난 5월 26일 열리는 집회에 대표를 파견, 인권협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7월 중에 인권협 소속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단체 대표들이 우토로 마을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5. 귀사와 귀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8.

# 우토로 재일동포들에게 연대하 !

## I. 우토로 문제란?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마치(京都府 宇治市 伊勢田町) 우토로는 제일 한국조선인 80세대 380명이 살고있는 마을이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일본차체(주)]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부동산업자인 (유)서일본식산에 토지(6,400 평)를 매각하여 이 회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철거 및 병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토로는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국책사업(군사비행장 건설, 군용기 제조공장, 비행사 양성소)을 위해 끌어모은 조선인 노동자(당시 1,300명)의 집단숙식처(飯場)이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 자리에 방치되었다. 조선인은 살아가기 위하여 그 자리에 부락을 건설하고 비바람을 견디며 우토로 토지를 점수하려는 미군에 맞서 싸워 땅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왔다.

전중, 전후의 비참한 시대를 견뎌내고 그런 가운데 점차 생활도 안정되고, 1987년에는 수도도 개설되어(그전까지는 오염된 지하수 물로 살아왔다.) 그제야 비로소 국가로부터 합법적 주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을 갖게된지 얼마되지 않아 청천벽력과 같은 철거명령을 받은 것이다.

우토로 문제는 일본 침략전쟁과 강제징용의 비극적인 역사의 상징적 유산이다. 우토로 재일동포들은 먼저 징용으로 강제노역을 강요한 일본정부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희생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신대문제등 일본의 전후책임에 대해 유엔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비판의 소리가 드높은 이때 전후보상은 커녕 이제 그 땅에서 돌출처럼 뿌리를 내리고 살려 써서온 전쟁희생자들과 그 후손들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채 뽑아 버리고자 하는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부도덕하고 비인도적인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우토로이다.

## II. 우토로의 역사

### 1. 전쟁전

지금부터 50년전 중·일전쟁이 격화하고 태평양전쟁을 목전에 둔 1940년 4월 2000여명의 노동자를 동원한 경도비행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공사는 조선, 아시아를 향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군사비행장이다. 이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설립된 국제공업(주)(1941년 회사합병으로 일본국제항공공업(주)로 되었다.)가 하고, 교토오부(京都府)는 토지매수와 설비공사를 일체 맡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치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비행장 설치와 항공기 승무원 양성소 설립의 일환으로 그 곳을 선택한 체신성(遞信省) 등 삼자가 하나가 되어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비행장, 승무원양성소, 항공기제조공장 등 약 100만평의 대규모 공사가 벌여졌고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조선인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우토로의 조선인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이른바 국책회사인 [일본국제항공공업주식회사]에 의해 비행기 생산공장이 건설되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부지의 한쪽 구석에 합숙소를 만들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토로였다.

### 나우누리>

보유하고 있는 IP 239개, 올해 유치 계획 161개, 총 400개  
민중운동 세력에게 개방적이라는 점과 사회운동세력들이 다른 통신회사에 비해 많이 진출해 있다는 장점, 그러나 이용자는 17만 3천명(180억원)  
뉴스메뉴중 일일전문지에 개설하는 것이 좋으나 사회포럼도 고려할 수 있다.

### 바른정보 참세상>

바른정보(김형준)는 01410망 정보사냥에 '참세상' BBS를 개설하고 있으며 회원제(가입회원 4000여명)로 운영하고 있다. 참세상은 ▲시민네트워크 ▲진보직 통신 ▲이용자자치네트워크를 지향하며 현재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세상을 지원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PC통신 하이텔>

보유 IP 600개, 올해 유치 계획 130개, 총 730개

Fax. 733-9123.



1. 우토로 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 1937. 5. 5. 일본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 1939. 11. 17. 국제공업주식회사 설립
- 1940. 6. 29. 우토로의 토지가 매수되고 다음해 일본국제항공공업주식회사로 동기
- 1941. 7. 1. 일본국제항공공업주식회사 설립  
1941년 경 우토로에 합숙소를 짓다.
- 1941. 12. 8. 미국, 영국과 개전
- 1945. 7. 24. 미군기에 의해 일본국제항공공업 료오토소공장 폭격
- 1945. 7. 30. 재폭격으로 공장 생산활동 정지
- 1945. 8. 15. 일본패전, 비행장 건설 중지  
1,300여 노동자 가족과 함께 방치
- 1945. 9. 25. 미결명군 일본국제항공공업 부지를 접수  
(우토로는 접수하지 못함)
- 1945. 9월경 우토로에 조선인 민족학교 건설
- 1946. 2. 7. 일본국제항공공업 일국공업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 1949. 12월경 일본정부의 탄압으로 우토로의 조선인 학교 폐쇄
- 1951. 6. 일국공업주식회사가 일산자동차 자본의 산하로 들어감  
후에 일산차체(주)로 사명변경

2. 전쟁 후

1945년 미군의 공격으로 군수공장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으로 조선인은 독립, 해방되었고 우토로에서도 해방의 기쁨으로 밤을 밝혔다. 그러나 비행장 건설공사의 중지료 1,300여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실직하였고 일본정부와 국책회사 어디로부터도 아무런 보장없이 방치되었다.

토지 : 더구나 관민일체의 이름으로 강제매수된 100만평의 광대한 국책회사 소유의 토지가운데 공장지역은 미군의 접수한 이후 관리방침에 따라 민수공장으로 전환되어 불하되었다. 그 회사는 [일국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버스의 차체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우토로의 조선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전쟁의 호황으로 커진 회사는 일산자본 산하에 들어가 오늘날 [일산차체]라는 대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토로 주민들은 살아가기 위해 합숙소 위에 집을 짓고 비바람을 이겨냈다. 또한 미군이 우토로의 토지를 접수하려고 할 때 생존권을 내걸고 미군에 맞서 결사적으로 싸워 이 땅을 지켰다. 그러나 그 땅은 전쟁전 국책회사를 인계한 청산회사의 흡수합병에 의해 1962년 8월 [일산차체]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철거 : 1988년 12월 부동산업자인 (유)서일본식산은 토지소유자로서 철거를 요구하는 문서를 우토로 주민 전부에게 송달하였다.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부동산 인자는 토지명도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였다.

우토로의 전 세대주들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토로는 철거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것은 1987년 5월 일산차체가 우토로의 토지 전부를 주민을 무시한 지 3자인 부동산업자 [서일본식산]에 매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40여년을 살아온 시효취득에 의한 토지소유권을 획득한 80세대 380명의 생활권과 토지를 팔아넘긴 것은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다.



경과

1987. 2-3	일산차체 수도권 배설 동의
3	(이때까지 우도로에는 수도권차 가설하지 못하였음)
8	일산차체, 우도로 토지 매각
1988. 3-6	주민들 일산의 토지매각 사실인지
7	정내회와 토지대책위원회 설치
8	일산차체에 신청서 제출
9	일산자동차에 신청서 제출
10	우도로마을 지키는 집회 개최(이후 매년 가을에 개최)
12	(유한회사)서 일본식산 무조건 퇴거 홍보
1989. 1.	우지시의회에서 우도로 문제 질의
2	(유)서일본식산 교외로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 제소(1차)
	건물해체업자가 우도로 마을에 진입, 주민들 저지로 무산
3.	우도로를 지키는 회 발족
4.	우도로에서 집회, 일산차체 교외로오공장으로 향의 퍼레이드
	(이후 매년 봄에 개최)
6.	교외로오부의회 본회의에서 우도로문제 질의
1990. 3	매일방송[우도로 90년 겨울]방송
4	KBS 긴끼(近畿)방송 우도로문제 방송
5	한국 한겨레 신문 보도
6	일본사회당 국회조사단 우도로 조사
6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우도로문제 질의
	KBS 긴끼 방송 - 전후보상과 우도로 문제 방송
8	간사이 TV - 우도로문제 방송
8	국제 평화포럼 - 우도로 개최
1991. 3.	우도로재판 증인조사, 변호사 회관에서 집회
4	우도로재판 증인조사(전 일산차체 사원)
11	강제연행문제 전국연락회의(국회의원 4명)이 현지조사
11	제 2차 우도로를 지키는 동경행동
	(일산자동차항의, 은좌선전행동, 수상관저로 정부요청)
11	우도로재판 화해조정예 들어감
1992. 6.	우도로재판 화해, 조정(유)서일본식산의 거부로 불성립
	KBS 긴끼방송에서 우도로문제 보도
8	우도로를 지키는 의견광고운동

1987. 2-3	일산차체 수도권 배설 동의
	(이때까지 우도로에는 수도권차 가설하지 못하였음)
3	일산차체, 우도로 토지 매각
8	일산차체 (유)서일본식산에 소유권 이전동기
1988. 3-6	주민들 일산의 토지매각 사실인지
7	정내회와 토지대책위원회 설치
8	일산차체에 신청서 제출
9	일산자동차에 신청서 제출
10	우도로마을 지키는 집회 개최(이후 매년 가을에 개최)
12	(유한회사)서 일본식산 무조건 퇴거 홍보
1989. 1.	우지시의회에서 우도로 문제 질의
2	(유)서일본식산 교외로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 제소(1차)
	건물해체업자가 우도로 마을에 진입, 주민들 저지로 무산
3.	우도로를 지키는 회 발족
4.	우도로에서 집회, 일산차체 교외로오공장으로 향의 퍼레이드
	(이후 매년 봄에 개최)
6.	교외로오부의회 본회의에서 우도로문제 질의
1990. 3	매일방송[우도로 90년 겨울]방송
4	KBS 긴끼(近畿)방송 우도로문제 방송
5	한국 한겨레 신문 보도
6	일본사회당 국회조사단 우도로 조사
6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우도로문제 질의
	KBS 긴끼 방송 - 전후보상과 우도로 문제 방송
8	간사이 TV - 우도로문제 방송
8	국제 평화포럼 - 우도로 개최
1991. 3.	우도로재판 증인조사, 변호사 회관에서 집회
4	우도로재판 증인조사(전 일산차체 사원)
11	강제연행문제 전국연락회의(국회의원 4명)이 현지조사
11	제 2차 우도로를 지키는 동경행동
	(일산자동차항의, 은좌선전행동, 수상관저로 정부요청)
11	우도로재판 화해조정예 들어감
1992. 6.	우도로재판 화해, 조정(유)서일본식산의 거부로 불성립
	KBS 긴끼방송에서 우도로문제 보도
8	우도로를 지키는 의견광고운동

이후 1985년 4월 28일 재판부에 의해 제 2차 화해안(주민들의 일괄매수 금액으로 17억엔을 제시)이 있었으나 두차례의 주민집회를 통해 주민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홍보함으로써 2차 화해조정안도 성립되지 못하였다. - 주민측의 입장은 17억엔으로 매수할 경우 공유지분인 도로부분등이 할증되어 평단 단가가 40만엔 수준으로 되어 주민측 주장인 평당 11만엔, 총 7억 400만엔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서일본식산이 일산차체(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4억 5천만엔, 평당 7만엔으로 따지면 실제 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원고(서일본식산)의 주장	2-3
2. 피고의 주장	4
3. 재판과정	5-8
4. 우토로 동포들에게 연대!	9-11
5. 결론	12

### III. 재판과정

1. 원고(서일본식산)의 주장
  - 토지소유권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라
2. 피고의 주장
  - 우토로 주민들은 계속해서 살아갈 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4가지다.
  - 첫째, 이미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 성립한다.
  - 둘째, 1987년 2월 당시의 소유자인 일산차체(주)에 의해 수도권 부설의 동회가 있었던 것은 우토로 주민의 지상권을 인정한 것이다.
  - 셋째, 우토로 주민들의 땅을 나누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토로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매취득을 할 권리가 있다.
  - 넷째, 지상에서 철거는 신의에 반하는 것이다.

### IV. 우토로 동포들에게 연대!

우토로 동포들의 싸움은 3중의 의미를 갖는다.

첫번째 토지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유한회사 서일본식산과의 법정투쟁이다. 서일본식산의 철거 및 토지명도소송 1심 판결은 빠르면 금년 7월말 늦으면 9월경에 매듭이 지어지게 된다. 우토로동포들은 피고가 되어 있지만 전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무시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우토로동포들은 이미 1987년 소유권 이전전에 점유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및 지상권에 대한 다툼은 당시 일산차체나, 일본정부사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상의 소유권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일단 불리하게 내려진다면, 일산차체와 일본정부와의 다툼에도 이득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상술한 바처럼 우토로동포들의 싸움은 오히려 일본정부 혹은 일산차체와의 다툼이 있다. 소유권 완성에 의한 매매 취득의 권리가 있는 주민들을 몰래 신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매각한 것을 반사회적 비인도적인 행위이기전에 기망과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또한 우토로 동포들이 자국민이었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일본정부의 재일 동포차별의 상징적 사례인 것이다.

세 번째로 우토로 동포들은 과거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나 전후배상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추악한 일본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우토로동포들의 싸움은 같은 피를 나누는 동족으로서 무관심해은 우리들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이상의 3중의 싸움가운데 나중 두가지 싸움은 중장기적 싸움이지만, 첫 번째 싸움은 아주 시급한 싸움이다. 이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갈수록 일본사법부는 보수적 경향을 더해가고 있지만, 세계화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 세계 여론에 민감해 있다. 특히 정신대문제등 전쟁책임을 지지않는 일본정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유엔 등 세계 여론의 강력한 비난 등에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이다. 우토로가 세계적 관심사로서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게된다면 일본 사법부로서도 무신경할 수는 없는 일이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국제부, 사회부, 인권담당 기자

제목 : 동티모르(East Timor) 독립인권운동가 자신토 도스 산토스(Jacinto dos Santos)씨 방한

문의 : 김은영 간사

발신일자 : 1996년 7월 2일

전송장수(표지 포함) : 3 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인권운동가인 자신토 도스 산토스(Mr. Jacinto dos Santos)씨를 1996년 6월30일(일)부터 7월5일(금)까지 한국에 초청하여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현실을 널리 알리고 동티모르의 인권개선과 독립을 위해 한국의 인권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권협은 참된 국제화/세계화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등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인권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외롭고 곳곳하게 싸워온 동티모르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 4일간의 행사중 7월 3일, 광주시민연대의 초청으로 광주와 망월동묘역을 방문합니다.

\*\*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아태지역에서 동티모르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권협에서는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회가 7월4일 저녁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참관)







## 동티모르 독립인권운동가 방한 일정 (6.30-7.5)

### 1. 서울 지역 일정

- 7.1 (월) 오전 10:00 ~ 12:00 기독교 인권센터 방문  
오후 2:00 ~ 3:00 민변 방문  
오후 7:00 ~ 9:00 로즈 페르난도 수녀 강연회 참석 및 발표  
장 소 : 카톨릭 회관 7층 대강당
- 7.2 (화) 오후 2:00 ~ 6:00 천주교 동티모르 소위원회 간담회
- 7.3 (수) 광 주 일 정
- 7.4 (목) 오전 서울 올라옴  
오후 2:00 ~ 3:00 민가협 목요집회 참석  
장 소 : 탑골공원  
5:00 ~ 7:00 7.4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종교인 순례 거리행진참석  
장 소 : 조계사 - 명동성당  
7:00 ~ 9:00 인권협 시드니회의 보고회 겸 동티모르 관심있는 사람들과의 간담회  
장 소 : 천주교 인권위원회, 명동성당 옆 카톨릭 센터 338호

### 2. 광주 지역 일정

- 7.3 (수) 오후 2:00 ~ 3:00 광주 망월동 방문 장 소 : 탑골내용 : 1)  
4:00 ~ 5:00 기자인터뷰  
5:00 ~ 6:00 사회단체 방문  
7:00 ~ 9:00 시민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  
10:00 민박
- 7.4 (수) 오전 서울 출발

### 3. 초 청 자 약 력 - Mr. Jacinto dos Santos

1963년 동티모르 리퀴즈에서 출생  
1993년까지 인도네시아 딜리와 동자바, 세미나리오(현 위디아사사나)에서 공부  
1993년 8월 호주로 망명  
1996년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이 주관하는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이수  
현 재 호주 멜본의 동티모르 인권센터의 간사  
- 오랫동안 신부가 되기위해 공부했다가 망명 때문에 포기함.

전송중 이상이 있을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1-0575, 522-7284    팩스 522-7285

수신 : 인권협 회원단체 및 위 행사에 관심있는 단체  
참조 : 박래균, 남규선, 고상만, 김한균, 신승민, 서래, 유가협 담당자, 오창익, 이성훈  
오완호, 장호순, 장혜선 씨 앞  
제목 : 인권협 동티모르 인권센터 활동가 초청  
발신 : 민변 김은영 간사  
발신일자 : 1996년 6월 22일  
전송장수(표지 포함) : 2

### 1. 일정

- 7.1 (월) 오전 10:00 ~ 12:00 기독교 인권센터 방문 (통역필요없음)  
오후 7:00 ~ 9:00 로즈 페르난도 수녀 강연회 참석 (이성훈 통역)
- 7.2 (화) 오후 2:00 ~ 6:00 전주교 동티모르 소위원회의 간담회 및 주교 방문 (이성훈 통역)
- 7.3 (수) 광 주 일정
- 7.4 (목) 오전 서울 올라옴  
오후 2:00 ~ 3:00 목요일 집회 참석 (김수지 통역)  
5:00 ~ 7:00 7.4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종교인 순례 거리행진참석  
조계사 - 명동성당 (김수지 통역)  
7:00 ~ 9:00 인권협 시드니회의 보고회 겸 동티모르 관심있는 사람들막이 간담회  
(이성훈, 안미혜 or 김수지 통역 분담 예정)

### 2. 초청자 약력 --- Mr. Jacinto dos Santos

1963년 동티모르 리퀴즈에서 출생  
1993년까지 인도네시아 딜리와 동자바, 세미나리오(현 위디아사사나)에서 공부  
1993년 8월 호주로 망명  
1996년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이 주관하는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이수  
한때 호주 글라더 캠프코트-인간개발센터 근무  
- 오랫동안 신부가 되기위해 공부했다가 망명 때문에 포기함.

### 3. 준비

- 숙박 4박 (3일은 정주에서 숙박) : 백주년기념관 예약
- 광주행 왕복 비행기티켓
- 안내
- \* 공항 마중 : 김은영
- + 월 오전 숙소->NCC : 신승민 / 강연회장->숙소 : 이성훈



Korea Human Rights Network

한국인권이etwork

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 32-11 (남산동) 11층

전화 : 02-377-1282

팩스 : 02-377-1283

대표이사 : 김현숙

- \* 화 오후 천주교->숙소 : 오창익
- \* 목 안내 : 김은영

- 4. 각 수신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항 - 꼭 연락주십시오.
- 1) 참여연대와 사회교육원, 대구 엠데스다 : 활동가들 초청하고 싶은지 혹은 참여하고 싶은 일정이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는지. (참고-월 오후, 화 오전 일정 비었음)
- 2) 김수지, 안미혜 씨 : 목요일 통역 되는지.
- 3) 주위 아는 기자들 중 관심있으려는 사람 연락처.
- 4) 이성훈씨 : 월 오후, 화 오전 일정 비었는데 아이디어 있는지. 빠진 거 있음 연락주세요. 천정매, 유선호 변호사 간담회 초청 혹은 국회 방문 조정 부탁드립니다. (전화 : 해마루 581-9411)
- 5) 오창익씨 : 4일날 간담회 할 장소와 식사장소 예약 부탁드립니다. 숙원하는 성별 젊은 수녀님 강연때 와 종교인 순례때 발언기회 가능한지와 발언시간 알려주세요.

보도자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제에 주시가 바랍니다

한국인권이etwork의... (faded text)

\*\* 보도자료는 나오는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송중 이상이 있을때에는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국제부 담당

발신: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간사단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전화 715-9185)

발신일: 5월24일

제목: 일본 우토로 동포들의 주거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총매수: 9매

보도시한: 5월26일(5월25일까지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와 귀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이하 인권협)는 9개의 인권단체가 모여 국내외 인권 문제에 대처하는 연합 조직입니다. 우리는 일본 교토시의 우토로 마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토로 마을 문제는 재일 동포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이번에 김경남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5월26일 열리는 집회에 파견, 인권협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롭게 싸우는 재일동포들의 인권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토로 마을 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당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각종 차별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3. 우리는 이에 맞춰 5월26일 우토로 현지에서 발표될 성명서와 우토로 마을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귀사에 보내니, 꼭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사와 귀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대표이사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사무장 : 김민준

(02-12-123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12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02-12-123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12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우토로 인권운동네트워크 후원자 : 김민준

### <성명서>

## 우토로 교민의 주거권을 인정하라

-우토로 제일 한국인 토지문제에 대한 한국 인권단체의 입장-

우리는 일본 교토부 우치시 소재 한국인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의 문제를 뒤늦게나마 전해 듣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방치된 채 온갖 민족적 핍박과 천대 속에서 전후의 삶을 이어왔다는 것은 대부분 제일 한국인들이 겪어온 바 있다. 그러나 전후 40년이 지나 반세기를 넘은 지금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토로 땅에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한 것은 국책사업을 주도한 일본정부, 사업자인 현재 일산자동차 계열의 (주)일본차체, 그리고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한 교토부 등 3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따라서 우토로의 한국인 토지문제 역시 이 3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교토 지방정부와 우치시는 하수도도 복개하지 않고 수돗물조차 절반밖에 공급하지 않는 등 우토로 마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유)서일본식산에 이 토지를 팔아넘긴 (주)일본차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의의 원칙에 반하는 매각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우토로의 토지가 우토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쟁책임과 전후보상의 차원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시인하고 우토로 주민의 주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들 한국의 인권단체는 우토로의 토지와 거주 한국인의 문제가 단지 법정에서 판단할 민사상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관심과 제일 한국인들에



<서평상>

우토로에 올린 우리 주교회의 모교우

우토로에 올린 우리 주교회의 모교우

우토로에 올린 우리 주교회의 모교우

우토로에 올린 우리 주교회의 모교우

우토로에 올린 우리 주교회의 모교우

우토로에 올린 우리 주교회의 모교우

대한 차별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단언한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두었던 땅위에 집을 짓고 아이를 키우며 40년 동안 보금자리로 가꾸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는다는 것은 생존권에 대한 박탈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토로의 주민들과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등 일본내의 양심적인 후원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지난 8년간 일본정부와 거대재벌의 횡포에 맞서 우토로를 지켜온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 뒤늦게나마 우리의 힘을 합쳐 우토로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다. 그들이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우토로에서 마음편하게 살게 될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의 결의를 전한다.

- 우토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인권단체, 시민단체 차원의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 일본내 인권단체를 포함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우토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1996년 5월 26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유가협)
- 천주교 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2.

이제 이보고서도... (faint Korean text)

이제 이보고서도... (faint Korean text)

이제 이보고서도... (faint Korean text)

1995년 2월 28일

- (부장, 홍승섭 대표이사)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총무) 김모 대표이사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사무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사무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사무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Security Laws in the Asia-Pacific

- \* Date : November 22 to 25, 1995 / 4 days
- \* Venue : Seoul, Korea
- \* Theme : The New World Order and Human Rights  
in the Post-Cold War Era  
- Human Security vs. National Security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NET)

Century II Bldg., Rm 704, 1595-2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070, KOREA

Tel: (822)-522-7284 / Fax: (822)-522-728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Security Laws  
in the Asia-Pacific

• Date : November 22 to 25, 1995 / 4 days  
• Venue : Seoul, Korea  
• Theme : The New World Order and Human Rights  
in the Post-Cold War Era  
- Human Security vs. National Security

한국인권단체협의회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NET)  
Century II Bldg., Rm 704, 1292-2 Secho-dong, Secho-gu,  
Seoul 137-070, KOREA  
Tel: (822)-522-7284 / Fax: (822)-522-7282

## Table of Contents

1. Background of the Conference
2. Objectives and Expected Outcomes
3.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4. Program Schedule
5. What is the KOHRNET?
6. Budget

### 1. Background of the Conference

The year 1995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also of the country's division. In order to commemorate this year of Jubilee, various events have been taking place and will take place throughout the year, in particular around the Independence Day of August 15, 1995. However, the political climate in South Korea is far from that of a Jubilee. The Korean peninsula is perhaps the only region where the cold war mentality still prevails. The word "national security" seems to be rooted too deeply in people's mind to give way to human security, a newly emerging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in Eastern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For the human rights movement, like many other movements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al reconciliation in Korea, 1995 is not a year of celebration at all. First of all, we cannot but remember with much pain and frustration hundreds of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still imprisoned. Mr. Kim Sun-myung, probably the world's longest-serving political prisoner who has been imprisoned for 44 years is one of them. For him, the Jubilee year of 1995 is just another year of endurance and hopeless waiting.

The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Kim Young-sam's so-called civilian government poses serious challenges to all human rights activists work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 rights, development, labor, women, environment, etc. After a few decades'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we were able to witness the historic inauguration of the elected civilian government in February 1993 with great excitement and high expectations. However, the reality we are forced to face today is a 'civilian dictatorship' replacing the past 'military dictatorship', which openly claims that there has been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record. One can notice without difficulty tha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human rights if one looks at the figure of those arres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number of prisoners of conscienc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s reported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It is unbelievable that the figure is even higher than during past military regimes.



Table of Contents

- 1. Background of the Conference
- 2. Objectives and Expected Outcomes
- 3.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 4. Program Schedule
- 5. What is the KOHRNET?
- 6. Budget

1. Background of the Conference

The year 1985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also of the country's division. In order to commemorate this year of Jubilee, various events have been taking place and will take place throughout the year. In particular, around the Independence Day of August 15, 1985. However, the political climate in South Korea is far from that of a Jubilee. The Korean peninsula is perhaps the only region where the cold war mentality still prevails. The word 'national security' seems to be rooted too deeply in people's mind to give way to human security, a newly emerging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with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in Eastern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For the human rights movement, like many other movements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al reconciliation in Korea, 1985 is not a year of celebration at all. First of all, we cannot but remember with much pain and frustration hundreds of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still imprisoned. Mr. Kim Sun-ryung, probably the world's longest-serving political prisoner who has been imprisoned for 44 years is one of them. For him, the Jubilee year of 1985 is just another year of endurance and hopeless waiting.

The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Kim Young-sam's so-called civilian government poses serious challenges to all human rights activists work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 rights, development, labor, women, environment, etc. After a few decades'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we were able to witness the historic inauguration of the elected civilian government in February 1988 with great excitement and high expectations. However, the reality we are forced to face today is a 'civilian dictatorship' replacing the past 'military dictatorship', which openly claims that there has been remarkable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record. One can notice without difficulty that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in human rights if one looks at the figure of those arrest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number of prisoners of conscienc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s reported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such as Amnesty International. It is unbelievable that the figure is even higher than during past military regimes.

Ironically, it is even more difficult for us to work effectively for human rights under the civilian government as human rights issues receive less attention from the media and public opinion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t has made us, human rights defenders, recognize that the election of a civilian government is neither a guarantee of full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nor the end of our struggl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We find ourselves in the second stage of a long march towards genuine democracy and human rights.

Very recently, the "Segehwa" (globalization)' became the catch-phrase of the present government. Despite its colorful rhetoric, it is very clear to us that the globalization policy is simply another political slogan in the face of global competition which has been used to justify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development dictatorship' and national security doctrine. Looking beyond our national boundary, it is apparent that human rights violation under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s not only unique to South Korea but a common phenomenon, particularly in many Asia-Pacific countries. National security ideology has taken different forms in different socio-political contexts in the Asia-Pacific under the pretext of economic development. What happened here in South Korea is now happening in other Asian countries.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suppression of the media and labor oppression in Indonesia, restriction of political activities in Singapore and Malaysia, even 1992 May massacres in Thailand, are what we had to confront in the past and continue to confront today.

It is in this context that KOHRNET, an umbrella organization composed of nine majo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s decided to organiz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security laws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ch have been identified as major structural obstacles to the better enjoyment of basic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other Asia-Pacific countries.

This conference will be a follow-up to the symposium under the theme "National Security vs. People's Security in Asia" which was held during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n June 17, 1993 in Vienna. Therefore,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in-depth and thorough analysis, debate, and exchange of views on various forms of national security-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using updated information. This will also be a space for all participants to share their experiences of struggles, and to discuss possible remedies and ways of prevention together with the issue of developing better networks and coordination among human rights groups and organiz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 2. Objectives and Expected Outcomes

Several general objectives have been set which are as follows:

- 1)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independence and division of Korea, and the Korean people's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peaceful reunification,
- 2)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rning the continue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 3) To put more pressur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peal or revise the present National Security Law,
- 4) To analyze various forms of national security-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find better remedies and ways of preventing them,
- 5) To search collectively for a new paradigm of human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which can be applied to Korea as well as to the Asia-Pacific to replace the national security ideology of the cold-war era,
- 6) To draw out effective strategies collectively for better networks and coordination among human rights groups and organiz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 7) To present outcomes of this conference to the existing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N Commission and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We are expecting this conference to mak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impact, as described as follows:

- 1) 'The Seoul Human Rights Declaration on National Security Law'  
The main content of the discussion of this conference which will be summarized in the form of a statement or declaration. It will serve as the basis or guideline in formulating a detailed future plan of action and common strategies for struggles against national security-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 2) Publication of a Book

All speeche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ill be compiled in book form to be shared among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issue,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academics, lawyers, etc.

### 3) Fourth Asia-Pacific Human Rights Workshop

The main outcome of this conference will be presented to the fourth Asia-Pacific Human Rights Workshop to be held in December, in Katmandu, Nepal, which will cover the issue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arrangements as decided by the resolution adopted by the 51st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5. Furthermore, Major findings and reflections on this conference will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to bring the issue of national security laws into the ongoing discussions of the UN Commission and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process of set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 5) Asia-Pacific Facilitating Team Meeting

Immediately after the four-day conference, a Asia-Pacific Facilitating Team meeting will be held to discuss various issues of common concern, such as the Asia-Pacific Human Rights Congress in 1996, Participation in the People's Plan for the 21st Century (PP21) General Meeting in March 1996 in Sri Lanka, the 4th Asia-Pacific Human Rights Workshop in December 1995 in Nepal, etc.

### 3.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KOHRNET will be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is conference. However, it will also be organized in close cooperation with many national organizations working in various fields of human rights such as development, labor, women, environment, etc. which have been affected by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Individuals interested in the issue will also be welcome to attend this conference.

The four-day conference is not a one-time event; rather it will be the culmination of a series of national seminars and campaigns to raise critical awareness among human rights defende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ssues which will be dealt with in this conference, it will be organiz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erms of contents and possible outcomes.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lready showed their intere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by sending us suggestions. They include the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ACFOD),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South Asia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SAHRDC),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ICHRDD), Human Rights Watch/Asia, Robert F. Kennedy Center for Human Rights, Article 19,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etc.

About 30 participants from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Due consideration will be given to achieving gender balance and diverse representa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victims, lawyers, academics, government officers, diplomats, etc. In particular, UN Special Rapporteurs or Working Group members working on national security-related issues will also be invited.

In order to make international participation more convenient and economical, the date of this conference was set one day after the thir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ummit on November 20 1995 in Osaka, Japan. That is specially for those who will be attending NGOs' parallel activities before and during the Osaka APEC Summit. The meeting of the Asia-Pacific Facilitating Team will also be held right after this conference in Seoul.



#### 4. Program Schedule - Tentative

##### Day 1 : November 22 (Wednesday), 1995

Morning & Afternoon - Arrival and Registration  
Evening - Opening Reception

##### Day 2 : November 23 (Thursday), 1995

Keynote Speech "The New World Order and Human Rights  
in the Post Cold War Era  
- Human Security vs. National Security"

##### Session I : National Security vs. Human Security in the Post Cold War Era and Basic Human Rights

The so-called new world order which has emerged in the face of the post-cold war era will be analysed critically with regard to human rights, an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pro-human rights new world order will be explored. In attempting to identify obstacles in doing so, the unjust South-North relation will be dealt with. In particular, human security, a newly emerging concept of security, will be introduced and analyzed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era. Furthermore, the interrelations among national security,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will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what have been discussed at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1993 and Copenhage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in 1995.

##### Session 2 : National Security Law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problems with the so-called 'Development Dictatorship' ideology which has been used to justify many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n many Asia-Pacific countries, will be discussed critically. In particular, suppression of or restrictions on workers' basic human rights, suppression of the media, and the right to association will receive particular attention in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Asian concept of human rights which has been propagated recently in some countries. Workshops will be organized to deal with the cases of South Asia, Indonesia, Burma, the Philippines, etc. more effectively.



### Session 3 : The Situation of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s worldwide

The general situation of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n the world will be reviewed with special focus on the human rights of divided countries such as Korea, Taiwan and former Germany. On the other hand, several exemplary cases will be presented in order to trace recent trends in national security ideology in the post-cold war era. Workshops will be organized to deal with the cases more deeply in a participatory manner.

#### Day 3: November 24 (Friday), 1995

### Session 4 : National Security Laws and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an essential right in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under any circumstance.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lation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such as media suppression, labor oppression, the system of ideology 'conversion', restriction of political activities, etc. will be analyzed to show that national security laws pose major obstacles to protecting and promot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n open society. The outcome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security laws to be organized by Article 19 in September this year in South Africa will also be shared with the participants.

### Session 5 : National Security-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xperiences of Human Rights NGOs

Various types of people's struggles against violations under national security laws, such as arbitrary detention, torture, unfair trials, extrajudicial executions, enforced disappearance, impunity, etc. will be discussed. Effective remedies and ways for prevention of massive national security-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will be explored. Experiences of grassroots struggles and daily life of human rights activists will be freely shared at the plenary and in a small group workshop.

### Session 6 :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in Ligh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UN Human Rights Mechanisms

Problems with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will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lso, the experiences of using UN human rights mechanisms will be shared in order to discuss how to make better use of them. The existing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 relation to national security laws, such as the Special Rapporteur on State of Emergency, Freedom of Expressio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tc. will be introduced and discussed in order to make possibl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ose mechanisms.



**Day 4: November 25 (Saturday), 1995**

**Session 7 : The Tasks of Human Rights Mov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 From National Security to Human Security**

Joint strategies on how to respond effectively to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ideology will be drawn out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s which take place in the previous sessions. Follow-up programs of Bangkok and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in 1993 will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critical assesment of the past activities in the region. The issue of a need to create a effective networks and coordination among Asia-Pacific human rights organizations will be debated upon in relation to many other existing networks in the region. In this connection, common strategies on the issue of the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Arrang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also be discussed.

- Adoption of 'The Seoul Human Rights Declaration on National Security Law'
- Press Conference
- Closing Ceremony and Farewell Party

Apart from the above program, various events will be organized during the conference which will hlep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human rights reality in South Korea. They are:

1) Thursday Street Rally in front of Pagoda Park  
This street rally was begun in September 1993 and has regularly taken place at 2:00 for about one hour every Thursday without fail. It has been a space where family members, relatives or friends of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 make public testimonie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still in prison are remembered.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one of the KOHRNET members, has been organizing the rallies in cooperatoin with other human rights groups.

2) Solidarity Night for Prisoners of Conscience  
All former prisoners of conscience will be invited to gather together to remember prisoners of conscience who are still in prison, particularly those accused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Several well-known singers will perform songs wishing for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nd the repeal or revision of the NSL in South Korea as well as other countries.



## 5. What is the KOHRNET?

KOHRNET is a national coalition body which is composed of 9 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n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ts members includes a wide range of action groups such as lay activists, lawyers, researcher, academics, victims, religious, etc. It was officially formed on June 20, 1994 as the permanent coordinating body to replace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KONUHC) formed for the collectiv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s in Korea in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June, 1993 in Vienna.

KOHRNET believes that all individuals and peoples are entitled to their basic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pholding their human dignity and worth. KOHRNET also believes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as reaffirmed by the Bangkok NGO Declaration and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in 1993. KOHRNET spares no effort to implement the spirit and caus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tw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and other human rights conventions.

Having inherited the people's struggle for self-determination and inspired by the unyielding courage for decades-long resistance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s, every member of KOHRNET is committed to the cause of genuin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make the above ideal and vision a reality, KOHRNET has undertaken or plans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1.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f actions or campaigns on human rights issues
  - Continuous efforts to publicize and provide legal aid fo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 Efforts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violating human rights
  - Organization of a task-force to respond collectively to grave, newly arising human rights violations
2. Compilat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 Monitoring and analyzing human rights violations
  - Publication of a human rights newsletter
  - Establishment of a computerized database system and information-sharing system
3.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ights activists
  - Public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material



#### 4.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y

- Responses to various urgent actions or appeals such as Urgent Appeal of the Asian Center for Progress of the Peoples (ACPP) - Hot line
- International solidarity campaigns, such as for East Timor
- Member of Asia-Pacific Human Rights Facilitating Team
- Participation in various human rights-related conferences and the UN Commission and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list of member organizations of KOHRNET as of June, 1995:

- \* Buddhists' Committee for Human Rights
- \*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 \* Human Rights Committee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Korea
- \*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of Korea (NADUK)
- \*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 \* National Council of Bereaved Families for Democracy
- \*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 6. Budget

### B. Expenditure

\* Unit : Korean Won / US\$ 1 = 780 Won

#### A. Expenditure

##### 1. Preparation (May - November, 1995)

1) Communication (telephone, fax, postage, etc.)		3,000,000
2) Allowance for coordinator	700,000 x 8 months	5,600,000
3) National Seminar	500,000 x 4 times	2,000,000
4) Documentation		1,000,000
5) Translation		1,000,000
6) Public Relations		1,000,000
7) Airfare		
i) Osaka - Seoul	200,000 x 10 persons	2,000,000
ii) Asia/Pacific	500,000 x 10 persons	5,000,000
iii) Others	1,000,000 x 10 person	10,000,000
8) Miscellaneous		3,000,000

-----  
 1) Contribution by participants  
 e.g. Airfare, board & lodging, registration fees, etc.

##### 2. Program

1) Rental of Conference Room		3,000,000
2) Accomodation	50,000 x 4 days x 30 persons	6,000,000
3) Food	5,000 x 12 times x 30 persons	1,800,000
4) Translation & Interpretation		3,000,000
5) Other Organizational Expenses		2,000,000
6) Reception		2,000,000
7) Closing Ceremony		2,000,000
8) Miscellaneous		2,000,000

-----  
 21,800,000

##### 3) Follow-up

1) Documentation		3,000,000
2) Communication		1,000,000
3) Contingency		1,000,000

-----  
 5,000,000

Total

60,400,000  
 (US\$ 77,400)



\* Unit : Korean Won \ US\$ 1 = 780 Won

A. Expenditure	
1. Preparation (July - November, 1995)	
3,000,000	1) Communication (telephone, fax, postage, etc.)
5,500,000	2) Allowance for coordinator 700,000 x 8 months
2,000,000	3) National Seminar 500,000 x 4 times
1,000,000	4) Documentation
1,000,000	5) Translation
1,000,000	6) Public Relations
2,000,000	7) Airfare
5,000,000	i) Osaka - Seoul 500,000 x 10 persons
10,000,000	ii) Asia/Pacific 500,000 x 10 persons
3,000,000	iii) Others 1,000,000 x 10 persons
3,000,000	8) Miscellaneous
<hr/>	
33,800,000	
2. Program	
3,000,000	1) Rental of Conference Room
6,000,000	2) Accommodation 50,000 x 4 days x 30 persons
1,800,000	3) Food 5,000 x 12 times x 30 persons
3,000,000	4) Translation & Interpretation
2,000,000	5) Other Organizational Expenses
2,000,000	6) Reception
2,000,000	7) Closing Ceremony
2,000,000	8) Miscellaneous
<hr/>	
21,800,000	
3) Follow-up	
3,000,000	1) Documentation
1,000,000	2) Communication
1,000,000	3) Contingency
<hr/>	
5,000,000	
<hr/>	
60,400,000	Total
(US\$ 77,400)	

## B. Expected Income

### 1. Local Contributions

1) Contribution from KOHRNET		9,000,000
2) Contribution from sponsor organizations		5,000,000
3) Contribution from individuals		
i) National Assembly members	50,000 x 100 persons	5,000,000
ii) Religious persons	50,000 x 100 persons	5,000,000
iii) Victims of the NSL	20,000 x 300 persons	6,000,000
iv) Pro-Human Rights Professionals	50,000 x 100 persons	5,000,000
	e.g. lawyers, professors, doctor, etc.	
4) Registration Fees	30,000 x 100 persons	3,000,000
		<hr/>
		38,000,000
		(US\$ 48,700)

### 2. Overseas Contributions

1) Contributions from participants		10,000,000
	e.g. Airfare, board & lodging, registration fees, etc.	
2) Contribution from funding agencies		12,400,000
		<hr/>
		22,400,000
		(US\$ 28,700)



# 13. 인권협 2차 정책 토론회

- \* 일 시 : 1996년 2월9일 - 10일
- \* 장 소 :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 \* 참가자 : 인권협 소속단체 회원

## < 진행 순서 >

- 대표 인사
- 발 제 ①. '희망의 인권운동'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소속 단체 현황 및 활동보고 : 소속 단체 집행위원
- 인권협 2차년도 상반기 사업보고 및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보고 (국제심포지움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의견취합을 겸함.)
- 발 제 ② : '인권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여려 의견들' : 간사단체
- 인권협 사업과 조직개편을 위한 토론 : 다같이 함께
- 자유시간 및 친목

## < 별첨자료 >

- 인권협 1차년도 사업보고
-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움 재정보고
- 국제심포지움 평가서
- 각단체 사업 및 현황보고
- 필리핀 인권연합 PAHRA의 사무국장 인터뷰

1. Local Contributors	
1) Contribution from KOHNET	2,000,000
2) Contribution from sponsor organizations	2,000,000
3) Contribution from individuals	
i) National Assembly members	50,000 x 100 persons
ii) Religious persons	50,000 x 100 persons
iii) Victims of the NSL	50,000 x 300 persons
iv) Pro-Human Rights Professionals	50,000 x 100 persons
e.g. lawyers, professors, doctors, etc.	
4) Registration fees	30,000 x 100 persons
	3,000,000
	-----
	38,000,000
	(US\$ 48,700)

2. Overseas Contributors	
1) Contributions from participants	10,000,000
e.g. Airfare, board & lodging, registration fees, etc.	
2) Contribution from funding agencies	12,400,000
	-----
	22,400,000
	(US\$ 28,700)



호동로 138번 1층 138호

1995년 8월 1일 ~ 1996년 1월 31일  
 임시 대표자 회의 개최  
 임시 대표자 회의 개최

< 1차 회의 >

1. 인사

2. 예산

3. 사업

4. 기타

(의결사항)

5. 결산

6. 기타

7. 기타

< 2차 회의 >

1. 인사

2. 예산

3. 사업

4. 기타

(의결사항)

\* 인권협 2차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95년 8월 - 96년 1월)

- 95년 7월 28일 : 제 3차 대표자회의 개최
  - 인권협 2차년도 상임대표, 간사단체 확정.
  - 상임대표-NCC 인권위 김상근 목사님, 간사단체-인권운동사랑방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개최 재확인 및 결의 다짐.
- 8월 10일 : 김선명씨등 장기수 석방을 위한 전단배포 및 홍보전(서울역 광장)
- 8월 28일 : 임시 대표자 회의 개최
- 9월 21일
  - ~ 26일 : 방콕 ARRC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가(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11월 3일 : 국가보안법 국내 심포지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11월 21일
  - ~ 25일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보고 >

1. 참석자수
  - 국내 300 여명
  - 해외 40여명 (비용부담자 10명)
2. 소요경비
  - 총 4,600여 만원
  - 수입 : 4,700 만원
  - 자세한 재정보고 별첨
3. 실행위 평가
  - < 별첨 >

\* 인권협 2차년도 상반기 재정보고 (95년 8월 ~ 96년 1월)

- 전기이월	-----	6,362,931
- 수입	-----	1,623,886
추가 가입비	150,000	
회비	1,450,000	
은행이자	23,886	
- 지출		
이월된 인쇄비	500,000	
비품	1,700	
A-I 로스다니엘 간담회	87,000	
E-T 호세 접대	50,000	
국제통화료	38,120	
- 잔액	-----	7,309,997



## 발 제 2. 인권협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를 위한 몇가지 견해들

### 1. 인권협의 창립 배경

- 비엔나 인권대회 공대위 경험의 성과 계승
-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 2. 인권협의 탄생

- 인권협의 성격 : 느슨한 협의 조직
- 인권협의 구조 :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상임대표, 간사단체,
- 사안의 검토, 결정, 집행의 절차

### 3. 인권협의 수임사항

-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 인권 교육의 실시
- 인권정보의 수집과 배포(인권자료에 대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공동활용)
- 국제연대

### 4. 인권협의 경과

- 사업 : 1,2차년도 사업보고 참조
- 회원단체의 참여도

### 5. 인권협의 현재의 모습

- 회원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 한국 인권운동의 국제연대의 창구
- 인권단체들이 상시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틀/ 그 효과와 한계
- 회원단체들간의 역량상, 내용상, 사업방식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
- 신속하고 단일한 집행력의 부족
- 한번 결정하기 무진장 힘든 조직
- 주인도 나서는 사람, 집단이 없는 조직

### 6. 인권협의 발전을 위해 제출된 여러 견해들

- 국내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기능을 높이자.
- 가입 단체를 확대하자 (인권관련단체 확대/ 인권사업 네트워크로 완전확대)
- 인권협 수임사항을 정돈하자
- 집행력을 강화하자(상근 간사의 채용, 집행위원장제의 도입 - 간사단체의 한계)
- 국제연대 관련(소극적 개선/ 적극적 개선)

### 7.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

- 개별단체에게 인권협을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장애가 되는가 ?
- 한국의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기조발제 2 : 09:00

주제 : "비상사태국"

연설자 : Leandro Davalos

Session 3 & 4 : 오전 09:30

주제 : "사회적 기업"



주요개지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움> 평가서

< 국제심포지움 본행사 일정표 >

- \* 주제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 일시 : 1995년 11월 22일 (수) - 24(금) / 3일간
- \*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제1일: 11월 22일(수)

<환영만찬>

- \* 시간: 저녁 6:00 - 9:00
- \* 장소: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집>
- \* 참석인원: 해외참가자 30명, 국내 인권협 회원 및 관계자 40-70명, 모두 70-100명

제2일: 11월 23일(목)

기조발제 1 : 09:00 - 09:30

- \* 주제 :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민간인권단체(NGO)의 역할"
- \* 연설자 : Mr. 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Session 1 : 09:30 - 12:00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아태지역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 사회자 이 미경
- \* 주발제자: 1. 오재식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2. Kinhide Mushakoji, HURIGHTS 의장
- \* 토론자  
1. 서 승  
2. Eric Sottas, SOS Torture, 제네바  
3. Basil Fernando (AHRIC)

Session 2: 오후 1:30 - 4:00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 사회자 Azusawa 변호사, 일본
- \* 발제자 1. Margaret Blanchard 교수, 미국 언론법  
2. Sandra Coliver, Article 19 남아공 회의 조직책임자
- \* 토론자 1. Rene Sarmiento, PAHRA, 필리핀  
2. 조용환 변호사, 민변, 한국  
3. James Ross

<민가협 목요집회>

- \* 시간 : 오후 5:00 - 6:00
- \* 장소 : 명동성당
- \* 주제 : 전세계/아태지역의 국보법 희생자 추모와 비인간적 국보법 철폐를 기원하며
- \* 참석자 : 해외참가자, 민가협 회원과 어머니, 인권협 회원단체 전원

제3일: 11월 24일(금)

기조발제 2 : 09:00 - 09:30

- \* 주제 : "비상사태/국가안보하에서의 인권보호"
- \* 연설자 : Leandro Despouy 교수, 유엔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

Session 3 & 4 : 오전 09:30 - 15:00 개발독재와 인권 & 나라별 사례연구

- \* 사회자 김 경남 목사